



라이너 케슬러 | 마부르크대¹⁾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이 자신을 이방인처럼 느끼며 사는 때가 있다면 바로 지금인 듯하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난민의 수는 최대 4000만 명으로 추산된다. 국제노동기구는 전 세계적으로 대략 1억 7500만 명을 이주민, 그 중 절반 정도를 노동자로 추정한다. 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찾아 자국 내에서도 아는 이 없는 낯선 땅으로 가야만 한다. 국내외적으로 노동이주 문제는 단지 산업노동자 뿐만 아니라, 전문직 종사자와 학생들의 일이기도 하다.

이민은 단순히 본인 뿐 아니라 그들이 떠난 고향에도 문제를 초래한다. 또한 이민은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도전이 된다. 마지막 심판에 대한 비유에서 예수께서는 “너희가 [...] 내가 나그네로 있을 때 영접하였

1) 독일 마부르크(Marburg) 대학교 구약교수(1993-2010)로 재직했으며, 현재는 명예교수이다.

다(마 25:35)”,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 것 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라고 선언하셨다. 이 말씀으로 인해 기독교인들이 이방인을 환대해야 함이 명백히 드러난다. 그러나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방인이란 어떤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인가? ‘이방인’이 단순히 외국인을 지칭한다면, 민족간 통합에 대한 요구와 개인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권리 사이에 긴장이 생길 것이다. 성서의 법은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응답하고 있는가? 이방인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해야 할 이유로 성서가 제시하고 있는 근거들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두 단계에 걸쳐 이 질문에 접근하고자 한다. 첫 번째 단계에서 본 논문은 이방인의 개념과 이방인의 형성과정을 포함하여 성서에 드러난 이방인 개념의 사회적 역사를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에서 본 논문은 이방인에 대한 성서의 법적인 본문을 제시하고, 본문 근거를 토대로 이방인에 우호적 태도를 견지해야 하는 원인을 논의하고자 한다.

1. ‘이방인’ 개념의 사회사적 역사 요약

영어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도 신분에 따라 이방인들을 다르게 지칭한다. 먼저 주목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고대 이스라엘의 ‘이방인’은 어떤 신분을 의미하는가?

1) ‘이방인’ 신분

‘이방인’으로 번역되는 네 개의 주요 히브리어 단어들이다. 그 중 두 개가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단어는 노크리(*nākr*)다. 이 단어는 문자 그대로 외국인을 말한다. 열왕기상 8장 41절에서 이 단어의 정의가 명시된다. 그는 “주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이방인”이자 “먼 곳에

서 이리로 오”는 자다(비교 신 29:22).

신명기 14장 21절의 본문은 노크리(*nākri*)를 말하지만, ‘외국인’을 지칭하는 ‘노크리’(*nākri*)와 ‘이방인’으로 번역되는 게르(*gēr*)는 구분된다. 이 둘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명사 게르(*gēr*)는 동사인 구르(*gūr*)에서 유래했다. 불트만에 의하면 두 단어는 모두 “자신이 본래 속했던 곳 이외의 장소에 소재하거나 사는 것을 의미”하며, 어떤 사람이 “그의 본래 고향과 비교하여 ‘이방인’임을 의미하는 단어”²⁾다. 게르가 “멀리 떨어진 나라에서 온 경우라면” 외국인을 지칭할 수도 있다(신 29:22). 그러나 게르는 자신의 고향, 자기 소유의 땅을 떠나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하는 이스라엘인도 지칭한다. 일반적으로 게르 개념은 사회적 약자의 입장을 나타낸다.

이외에도 토샤브(*tōšāb*)라는 단어가 있는데, 게르 베토샤브(*gēr wetōšāb*, 나그네와 떠돌이)라는 조합으로 자주 등장하며(“나그네와 떠돌이”, 창 23:4; 레 25:35, 47), 게르와 구분 짓기는 어렵다³⁾. 이방인을 가리키는 마지막 단어는 자르(*zār*)⁴⁾인데, 법률 본문에서 ‘이방인’을 지칭하는 전문 용어로 사용된 적이 없기 때문에 본 논문은 이 단어를 고려 대상에서 제외시키고자 한다.

2) 그/그녀는 어떻게 이방인이 되었는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본래 속해 있던 곳이 아닌 장소에서 사는 자”라는 정의가 이방인에 관한 가장 폭넓은 정의이며, 게르는 “그의 본래 거주지와 비교했을 때 ‘이방인’된 자”⁵⁾를 지칭한다. 이에 따라 우리는 왜 사람들

2) Ch. Bultmann, *Der Fremde* 1992, 17(“여기에 사용된 동사는 체류를 의미하며, 동시에 어떤 사람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서의 정착을 의미한다. 따라서 게르는 체류장소와 관련하여 이방인 <혹은 타지인>을 말한다”).

3) *gēr* 과 *tōšāb* 의 논의에 대해서는 Ch. Nihan, *Resident Aliens* 2011를 참조할 것.

4) 2011년에 *gēr - nākhri - tōshav - zār*를 연구한 R. Achenbach는 *zār*를 보증인/보호자가 없는 (unwarranted) 사람으로 번역한다. R. Achenbach, 43.

5) Ch. Bultmann, *Der Fremde* (1992), 17(“어떤 사람의 원래 거주지가 아닌 다른 장소에 [...] 따라서 게르는 체류장소와 관련하여 이방인 <혹은 타지인>을 말한다”).

이 자기 본향을 떠났고, 본래 속했던 곳이 아닌 낯선 곳에서 살게 되었는지 질문해야 한다. 이에 관해 네 가지 가능성 있는 원인이 있다.

첫 번째 원인으로 개인적 갈등이 제시될 수 있다. 창세기의 야곱 이야기는 이를 잘 묘사한다. 야곱은 장자권과 아버지 이삭의 축복을 흠침으로써 형 에서를 배반했고, 그와 갈등을 빚었다.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하자 어머니는 야곱에게 도망할 것을 조언한다(창 27장). 야곱은 그의 삼촌 라반에게로 피신해 아람인의 땅에서 20년간 게르(창 32:5에서 동사 *gûr*의 용례 참고할 것)로 살았다(창 31:38).

두 번째 원인으로 정치적 박해가 가능하며, 이에 관해 성서는 몇 가지 이야기를 전한다. 모세는 그의 이집트 고향에서 미디안 땅으로 피난한다. 거기서 그는 “내가 낯선 땅에서 나그네(*gēr*)가 되었구나!”라고 말한다(출 2:22; 18:3). 선지자 우리야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대적하는 예언을 한 뒤, 여호와와 김 왕의 살해위험을 피해 이집트로 피난해야 했다. 그는 이집트에 의해 여호와에게 송환될 때까지, 이집트에서 잠시 이방인으로서 거주했다(렘 26:20-23). 마지막 경우는 예수의 가족이다.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의 가족은 헤롯의 정치적 박해를 피해 이집트로 피난했다고 알려준다(마 2:13-15).

세 번째 원인으로 기근 등 경제적 원인이 제시될 수 있다. 성서에 등장하는 가부장적 가족들은 기근 때문에 (일시적이든 영구적이든) 모두 한 번씩은 가나안 땅을 떠났다. 이는 아브라함이 아브람이던 때부터 시작된다. 창세기 12장 10절은 “그 땅에 기근이 들었다. 그 기근이 너무 심해서 아브람은 이집트에서 얼마 동안 몸 붙여서 살려고 그리로 내려갔다”고 보도한다. 또 기근 때문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블레셋 땅에서 게르가 되었다(창 46:1-6). 이삭의 아들 야곱은 가나안 땅에 심각한 기근이 들자, 자기 가족 전체와 함께 땅을 떠나 최종적으로 이집트에 정착했다(창 46장). 룯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일화도 유명한데, 이들은 그들의 고향인 베들레헴에 기근이 들었을 때 모압 땅에서 게림(*gērīm*)으로

살았다. 모압인들이 호의를 베풀지 않았더라면 롯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거나 다윗 왕의 조부가 될 아들을 낳지 못했을 것이다.

네 번째 원인으로 전쟁이 있다. 이사야 15-16장은 유다의 이웃국가인 모압의 전쟁과 파멸을 다룬다. 또 이사야 16장 3-4절에서 예언자는 그의 유대 동포들에게 “우리는 피난민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해치지 못할 곳에 우리를 숨겨 주십시오. 우리가 이 땅에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십시오⁶⁾.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들에게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라는 말을 전한다. 여기서 전쟁 피난민의 정착을 허락하는 것은 성스러운 의무로 여겨진다. 실제로 북왕국 수도였던 사마리아가 기원전 722년 아시리아에 의해 정복되자 피난민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스라엘인들은 살해되거나 강제추방 당했지만, 많은 수가 남유다로 탈출하는데 성공했다. 그들은 주로 남유다 예루살렘에 정착했고, 예루살렘 내에는 거대한 이방인 구역이 형성되었다. 몇몇의 해석자들은 “유다에 사는 외국인 나그네(대하 30:25)”를 인용해 예루살렘 내 외국인 구역의 역사적 발전을 설명하려 한다⁷⁾. 그랬을 수도 있다. 그러나 산헤립이 기원전 722/1년 유다 전 지역을 정복했을 때, 유다에 남아있던 대부분의 이방인들은 (외국인이 아니라) 유다 태생이 아니거나 유다 땅을 소유하지 못한 북이스라엘인 혹은 남유대인이었다.

3) 이방인 개념의 역사적 발전

앞에서는 이방인 신분을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이방인으로 살았던 원인을 고찰했다. 이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이방인

6) 혹은 ‘이방인으로서 당신들과 함께 살도록 해주십시오’로 번역할 수도 있는데, 히브리어 본문은 이때 동사 구르(*gûr*)를 사용했다.

7) W. Meier, “... Fremdlinge, die aus Israel gekommen waren ...”: Eine Notiz in 2 Chronik 30:25f aus der Sicht der Ausgrabungen im jüdischen Viertel der Altstadt von Jerusalem”, BN 15 (1981) 40-43, 참조. R. W. Klein, *2 Chronicles* (2012), 440, 각주 72에서 Klein은 Meier의 의견을 거부하며, “그들이 히스기야의 말을 따라 이스라엘에서 온 임시거류민이라고 생각한다.”

개념의 발전 과정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한다. 이스라엘 건국 당시부터 항상 이방인이 존재했음은 자명하다. 그러나 왕정 초기, 이방인으로서의 삶은 순전히 개인적 차원의 문제였다. 기원전 8세기 예언자들이 남긴 사회비판적 기록에 이방인 주제가 등장하지 않음은 흥미로운 일이다⁸⁾. 게림을 사회적 집단으로 언급한 최초의 예언자는 예레미야(렘 7:6; 22:3)와 에스겔(겔 22:7, 29)이며, 이후 스가랴(스 7:10)와 말라기(말3:5)에도 게림에 대한 기록이 등장한다.

이방인에 대해 최초로 언급한 법 본문인 계약법전(출22:20; 23:9, 12)은 대략 기원전 8세기 후반에서 7세기 초반에 형성된 것으로 추측된다. 계약법전 조항들은 공통적으로 ‘이방인’을 하나의 구분된 집단이자, (기원전 8세기 후반) 아시리아의 위협처럼 이스라엘 사회 발전을 위해 극복해야 할 문제적 요소로 언급한다.

예언서 뿐만 아니라 법 조항도 당시의 이방인들에 대해 위태로운 삶을 영위하는 집단으로 규정했다⁹⁾. 그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도시 혹은 마을에서 자기 명의를 땅을 가지지 못한 자들이었고, 그런 점에서 완벽한 자유민은 아니었다. 그들은 자영농의 집에 얽혀 더부살이해야 했다. 십계명의 안식일 법은 일곱째 날 쉴 수 있는 (한 가정의) 식구들을 나열한다. 즉 “너희나, 너희의 아들이나 딸이나, 너희의 남종이나 여종만이 아니라, 너희 집짐승이나, 너희의 집에 머무르는 나그네라도, 일을 해서는 안 된다”(비교, 출 20:10; 신5:14). 이방인들은 비참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로 자주 언급된다.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비교 신 14:29, 16:11, 14:24:19-21; 렘 7:6; 22:3; 이외에 겔 22:7; 스 7:10; 말 3:5).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빈궁한 처지에 놓인 자들과 대조적으로 외국인

8) 이방인이 언급된 다른 본문인 이사야 14장 1절은 제 2성전 시기의 후대 본문이다. 참조, W. A. M. Beuken, *Jesaja 13-27* (2007), 81.

9) 왕정시대의 이방인이 처했던 상황에 대해서는 다음을 참조할 것. Christiana van Houten, *The Alien in Israelite Law*, (JSOT 1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58-59.

과 과부, 고아는 자신의 사회적 신분 때문에 약자의 위치에 처해 있다. 기원전 8세기 이후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내분에 따라 자영농의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지면서 빈곤층이 등장한 것에 반해, 이방인과 고아, 과부의 빈곤은 그들의 사회적 신분에 기인한다.¹⁰⁾

아시리아의 위협, 기원전 7-6세기의 포로, 페르시아의 통치는 상황을 반전시켰다. 이 시대에 일어난 수많은 전쟁으로 인해 망명자의 수가 증가했다. 아시리아와 바빌론은 이스라엘인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그 땅에 비이스라엘인과 비유다인을 불러들였다. 페르시아 통치시기에 페르시아 행정 구역의 수는 총인구를 구성하는 각 민족의 수와 일치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비유대인의 숫자가 증가했다. 이방인들은 더 이상 소수도, 약자도 아니었다. 이제 더 이상 약자가 아닌 그들은 경제적으로 부유해졌으며, 사회적으로 유대인보다 우월한 위치를 점했다. 희년법 본문에는 이러한 상황이 잘 드러난다. 즉 “너희와 함께 사는, 나그네 신세 된 외국 사람이나 임시 거주자 가운데 부자로 사는 사람이 있는데 [...]” (레 25:47, 이외에 신 27:43과 비교하라).¹¹⁾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시대를 거치면서 이방인 문제는 점점 더 사회적 영역에서 종교적 국면으로 이동해 갔다. 이방인은 더 이상 자신의 신분 때문에 약자로 치부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민족적-종교적 정체성을 지닌 자, 비유대교인 정도로 분류되었다. 이것이 히브리 성서의 결론이 완성된 후 게르의 의미가 개종자, 즉 유대인이 되기로 서원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전문용어로 변화된 원인이다. 그러나 히브리 성서에서 개종자를 가리키는 용례로서 게르의 쓰임은 발견되지 않았다.

10) Ch. Lohfink/ van Houten, *Alien* (1991), 95 에서 van Houten은 다음과 같이 논한다: “당시 빈곤층은 과부, 고아, 이방인 계층과는 구분되는 개별적 계층이었다. 오직 채무 문제에 관해서만 빈곤층 문제가 다루어진다... 고아, 과부, 이방인(레위기 본문의 경우 가끔 노예를 덧붙이기도 한다)을 다루는 법은 (채무 문제와는) 다른 요지를 가지고 있다. 해당 규정들의 요지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계층을 위한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데 있다.”

11) 게림은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다. Ch. Bultmann, *Der Fremde* (1992), 179, 187.

이방인 개념의 역사적 발전에 대한 설명은 이쯤에서 마무리 짓고, 두 번째 요점으로 돌아가서 법률 본문 및 관련 본문에서 이방인을 어떻게 대우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2. 이방인 대우에 관한 유대법 전통

2장의 논의는 두 가지 소주제로 세분화된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관련한 법적 규정을 설명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유대법 전통이 이방인을 우호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원인을 찾는 것이다.

1) 이방인에 대한 법적 보호

이방인들은 오경의 법률 본문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방인이 언급되어 있는 각각의 법을 다 언급하기가 불가능할 정도다. 그래서 먼저 몇 가지 포괄적인 법을 개관하고자 한다.

앞에서는 왕정 시대의 이방인들이 대체로 곤궁한 자들로서 과부, 고아와 더불어 사회적 약자를 지칭한다는 점을 언급했다. 결과적으로 이들은 이스라엘 공동체 내에서 보호 대상으로 분류되었다. 이는 그들이 어떤 형태로든 압제 하에 있었음을 보여준다. 히브리 성서에서도 가장 오래된 성문법인 계약법전은 포괄적인 규정을 명시한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출 22:21). 그 다음 절은 다음과 같다. “고아와 과부를 괴롭히면 안 된다”(출 22:22). 이 두 절은 계약법전 내에서 출애굽기 23장 9절까지 이어지는 사회-종교법 자료의 시작점이다. 출 23장 9절은 전체 단위의 첫 번째 절을 반복(“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이방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함으로써 수미쌍관의 반지 고리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본문 구조는 계약 법전 내에서 이방인 보호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신명기 저자가 비참한 처지에 놓인 자들로 꼽는 이방인, 고아, 과부에

대해서는 앞에서 이미 언급했다. 신명기에는 이들이 6번 언급된다. 이 집단에 속한 자들은 매 3년마다 각 마을에서 축적해둔 십일조로 구제를 받았다(신 14:29). 그들은 이스라엘인의 식구로서 성전의 축제에도 참여할 수 있었다(신 16:11, 14). 또 추수 후 들판과 올리브 밭, 포도밭 등에 남은 소출을 거두는 것도 허락되었다(신 24:19-21).

계약법전과 신명기를 개정한 성결법도 이방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처우하도록 규정한다. 레위기 25장 37절에서는 게립이 유대인보다 더욱 부유해지거나, 많은 권력을 가지게 될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당시 이방인들은 여전히 위태한 삶을 살았다.¹²⁾ ‘나그네와 가난한자’들은 포도원이나 밭의 주인들이 포도와 곡식의 수확을 마친 후, 남은 것들을 수확할 권리를 가졌다(레 19:10, 23:22). 레위기 19장 33절은 이방인을 여전히 약자의 신분으로 설정하여, 이방인을 압제하지 말라는 계약법전의 금지조항 원본에 첨부조항을 더하기도 했다. 성결법은 출애굽기 22장 21절을 인용한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들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레 19:33). 그리고 첨부조항이 붙는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레 19:34). “외국인을 억압해서는 안 된다”는 금지조항은 긍정명령으로 완성된다.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방인은 이스라엘 백성과 동등한 위치에 놓인다. “이방인을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는 명령 앞에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레 19:18)는 명령이 선행하며, 이방인은 이웃과 같은 위치에 놓인다. 예수께서는 야훼를 사랑하라는 명령과 함께 이웃 사랑을 가장 중요한 계명으로 꼽았다(마 22:34-40, 막 8:28-34, 눅 10:25-28).

오경의 주요 법이 이방인을 보호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몇

12) R. Albertz, *Aliens* (2011), 57.

몇 본문들은 고아, 과부와 더불어 이방인을 구제대상으로 간주하는 인상을 준다. 그 자체로도 사실이지만,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이방인 우호정책은 단순한 선행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사회정의의 차원에서 다뤄진다. 유대인 동포들과 이방인에 대해 동등한 대우를 강조했던 몇몇 법들은 이방인 우호 정책과 사회정의 사이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2) 이방인 차별 금지

신명기 1장에서 모세는 재판에 대해 언급하면서, 호렘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스라엘 회중들에게 상기시킨다. “그때에 내가 당신들 재판관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당신들 동족 사이에 소송이 있거든 잘 듣고 공정하게 재판하시오. 동족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의 소송에서도 그렇게 하시오 [...]”(신 1:16). 말 그대로 본문은 “동족 사이에서만 아니라, 동족과 외국인 사이에서도 공정하게 판결하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스라엘 자유민끼리의 소송뿐 아니라 자유민과 이방인의 소송에서도 그러한 것이다. “그의 이방인”¹³⁾이라는 단어의 접미사는 이방인이 어떤 사람의 ‘동족’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과 동등하게 연결됨을 의미한다. 의존적으로 더부살이하는 이방인에게 이스라엘 동포와 동등한 법이 적용된다.

신명기 12-26장에 걸쳐 있는 법 본문의 끝부분에서는 이방인 차별금지법이 다양한 형태로 반복된다. “너는 외국인과 고아의 소송을 맡아 억울하게 재판해서는 안 된다.”(신 24:17). 이방인은 전체 사법 공동체의 일부이며, 그는 법적으로 소외되지 않는다.

신명기 1장 16절에 드러나는 이방인 차별금지법은 지표역할을 한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해당 본문이 다른 곳에서도 언제나 반복되었

13) 해당 본문의 3인칭 접미사는 히브리 성서 전체와 비교할 때 독특한 형태를 갖고 있다. L. Peritt, *Deuteronomium* (2013), 74.

던 것은 아니다. 해당 본문은 임금지급에 관련한 법 본문에서만 유일하게 반복된다. 신명기 24장 14절은 “같은 겨레 가운데서나 당신들 땅 성문 안에 사는 외국사람 가운데서, 가난하여 품팔이하는 사람을 억울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신명기법이 구성되던 당시, 일용직 노동자층이 비교적 새로운 사회적 계층으로 등장했기 때문에 해당 구절이 다시 언급된 것으로 보인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노예계층의 존재는 이미 오래된 사회적 현상이었다. 그러나 일용직 노동자의 등장은 기원전 7세기경부터 8세기까지 이어진 사회적 위기의 결과로 대두된 문제였다.¹⁴⁾ 이러한 특수상황 속에서 차별금지법 조항이 반복된 것이다.

이방인 차별금지법은 제사장 문서의 법률에서도 차용된다. 성결법에서 제사장 문서(P) 계열 기사는 투석형에 해당하는 범죄의 종류를 나열하는데, 주로 신성모독과 살인이 이에 해당된다. 여기서는 히브리 성서에 드러난 사형제의 문제점을 논하지 않을 것이다.¹⁵⁾ 단지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해서는 레위기 24장 마지막 문장에 등장한 이방인의 법적 위치가 중요하다.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레 24:22). 본문에서 외국인 차별 금지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난다.

앞서 언급한 제사장 문서 계열 법조항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이방인 차별 조항으로 흔히 이해되는 신명기의 두 본문을 짚고 넘어가고자 한다. 하나는 채무 면제 조항이며, 다른 하나는 이자금지조항이다. 이 두 조항은 내국인의 채무 면제는 가능한 반면, 외국인 채무자에 대해서는 소송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고 있다. 그리고 이 두 법은 외국인에 대한 이자 징수를 허용한다(신 15:2-3; 23:20). 해당 본문에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의 차별이 나타난다. 그러나 여기서 본 연구의 서두를 회상

14) R. Kessler, Lohnarbeit (2011) 내의 필자의 논문 참조할 것.

15) Th. Hieke, Todesstrafe 2004. 참조.

해보면, 해당 부분에서는 히브리어의 ‘이방인’(ger)을 지칭하는 단어와 ‘외국인’(naker)을 지칭하는 단어는 다르다는 점을 다뤘다. 채무 면제와 이자 징수의 대상은 위태로운 사회적 위치에 서 있는 계층인 이방인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경제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외국인이다. 이스라엘인이든, 외국인이든 가난한 이웃인 이방인에게 채무 면제를 요구하거나 이자를 징수하는 것은 금지되는 반면, 단순한 사업 관계에 있는 사람들 간에는 허락된다.

3) 이방인의 종교적 정체성

앞서 언급한 법 중, “이 법은 이스라엘 사람에게는 말할 것도 없고, 함께 사는 외국 사람에게도 같이 적용된다. 나는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레 24:22)라는 본문은 제사장 문서의 법률 본문에서만 20번 가까이 다양한 형태로 변주된다. 그 중 많은 경우가 특정한 문화와 종교적 상황에서 이방인과 이스라엘인에 동등한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본문은 유월절(출 12:19, 49; 민 9:14), 대속죄일(레 16:29) 그리고 다른 많은 기념일들(레 17:8-15; 18:26; 20:2 등)을 언급한다. 이 모든 경우에 이방인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구성원이다. 그들은 후대적 의미의 ‘개종자들’도 아니며, 이스라엘 사회의 일부로 통합될 수 있었다. 그들은 차별 받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토라 내에 이방인을 차별하는 것처럼 보이는 본문이 하나 더 있는데,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신명기 14장 21절은 죽은 동물의 고기에 대해 말하면서 “당신들은 [...] 저절로 죽은 것을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것은 당신들이 사는 성에 있는 나그네에게 먹으라고 주거나, 이방 사람들에게 파십시오”(신 14:21)라고 명령한다. 이스라엘인들에게는 법이 지시하는 그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있었다. 그러나 이방인과 외국인들은 이 법을 반드시 준수할 필요가 없었다. 그 원인으로는 외국인들이 동물 가죽을 거래하기 위해 죽은 동물을 사들였던 것 때문일 가능성이 있

다. 또 이방인들의 경우, 경제적으로 가난했기 때문에 죽은 동물을 먹었을 가능성이 있다. 죽은 동물을 먹지 못하게 하는 종교적 법이 이스라엘人には 적용되는 반면, 이방인과 외국인들에게까지 이 법이 적용되지는 않았다.

3. 이방인 우호 정책의 근거

히브리 성서는 이스라엘이 이방인들을 우호적으로 대해야 하는 근거로 두 가지를 제시한다. 이는 인도적 원인과 신학적 원인으로 구분된다.

1) 이스라엘의 집단적 경험

인도적 원인은 이스라엘의 집단적 경험에서 유래한다. 오경에 기록된 대로의 역사에 따르면, 이스라엘이라는 집단은 이집트에서 형성되었다. 그들은 거기서 이방인이었다. 이방인 보호와 관련된 몇몇 법은 이스라엘의 역사와 관련해 법을 이야기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학대하거나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몸 붙여 살던 나그네였다”(출 22:21),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레 19:34),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 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신 10:19). 이러한 표현들은 계약법전, 성결법전, 신명기법에서 유래한다. 이는 오경 법 본문에 포함된 모든 계열의 자료들이 외국인에 대해 동일한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출애굽기 23장 9절에야말로 가장 포괄적인 표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너희는 너희에게 몸 붙여 사는 나그네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로 몸 붙여 살았으니, 나그네의 서러움을 잘 알 것이다”(출 23:9). 그들 자신도 한때 이

방인이었으므로 이스라엘인들은 이방인들의 처지를 헤아려 주어야 한다.

이스라엘인이 아닌 우리도 이 규정들을 따라야 하는가? 히브리 성서는 한걸음 더 나아간다. 이집트에 살았던 이스라엘인들만이 이방인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다. 희년법에서 하나님께서 “땅은 나의 것이다. 너희는 다만 나그네이며, 나에게 와서 사는 임시 거주인일 뿐이다”(레 25:23)이라고 말씀하신다. 시편 기자는 “나 또한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돌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길손과 나그네”(시 39:12)라고 고백한다. 시편 119편 19절에는 “나는 땅 위를 잠시 동안 떠도는 나그네입니다”라는 기록이 있으며, 역대기에서 다윗은 “주님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처럼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에 불과하며 [...]”(대상 29:15)라는 고백을 반복한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인간은 이방인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이방인이 된 심정을 이해하고 그를 존중해야 한다.

2)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방인을 보호하고 사랑해야 할 두 번째 원인으로,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제시될 수 있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레위기 19장은 하나님의 거룩성을 공표한다. 레위기 19장은 “너희의 하나님인 나 주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레 19:2)는 말로 시작된다. 이스라엘의 거룩성은 야훼의 거룩성을 닮아있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라는 표현은 압축형인 “나는 주이다”라는 표현과 함께 레위기 19장에서만 15회 반복된다. 이 표현은 이방인을 사랑하라는 계명의 끝에도 반복되며, 해당 본문은 다음과 같다. “외국 사람이 나그네가 되어 너희의 땅에서 너희와 함께 살 때에 너희는 그를 억압해서는 안 된다. 너희와 함께 사는 그 외국인 나그네를 너희의 본토인처럼 여기고 그를 너희의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 살 때에는 외국인 나그네 신세였다. 내가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레 19:33-34). 기록하신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사랑하시므로, 이스라엘 또한 이방인을 사랑해야 한다.

신명기에서도 같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신명기 10장 17-19절에서는 하나님을 가장 높으신 분으로 칭송한다.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은 전능한 기적과 표적을 통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향한 사랑을 통해 나타난다. 이스라엘을 행동하게 하는 힘 또한 사랑이어야 한다. “이 세상에는 신도 많고 주도 많으나, 당신들의 주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며, 고아와 과부를 공정하게 재판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신 10:17-19). 본문 중에서도 특히 마지막에 이방인을 사랑해야 하는 인도적 원인과 신학적 원인이 드러나 있다.

이제 글을 마무리 짓고자 한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주님이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서두에 인용한 최후의 심판 비유로 글을 맺고자 한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가 [...] 나그네로 있을 때에 영접하였다”(마 25:35). 그리고 예수께서 선언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마 25:40).

4. 참고문헌

Achenbach, R., “gêr - nâkhrî - tôshav - zâr: Legal and Sacral Distinctions regarding Foreigners in the Pentateuch, R.

www.kci.go.kr

- Achenbach, et al.(ed.), *The Foreigner and the Law: Perspectives from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R 16;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29-51.
- Albertz, R., “From Aliens to Proselytes: Non-Priestly and Priestly Legislation Concerning Strangers, R. Achenbach, et al.(ed.), *The Foreigner and the Law: Perspectives from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R 16;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53-69.
- Baker, D. L., *Tight Fists or Open Hands?: Wealth and Poverty in Old Testament Law*, (Michigan/Cambridge, U.K.: grand Rapids, 2009).
- Berlejung, A./A. Merz, “Fremder,” A. Berlejung/Ch. Frevel(Hg.), *Handbuch theologischer Grundbegriffe zum Alten und Neuen Testament*, (HGANT; Darmstadt, 2006), 192-195.
- Beuken, W. A. M., *Jesaja 13-27*, (HThKAT; Freiburg u.a.: Herder, 2007).
- Bultmann, Ch., *Der Fremde im antiken Juda. Eine Untersuchung zum sozialen Typenbegriff ‘ger’ und seinem Bedeutungswandel in der alttestamentlichen Gesetzgebung*, (FRLANT 153; Göttingen: Vandenhoeck & Ruprecht, 1992).
- Crüsemann, F., “Das Gottesvolk als Schutzraum für Fremde und Flüchtlinge. Zum biblischen Asyl- und Fremdenrecht und seine religionsgeschichtlichen Hintergründen,” F. Crüsemann, *Maßstab: Tora. Israels Weisung und christliche Ethik*, (Gütersloh, 2003), 224-243.
- Crüsemann, F., “Gott und die Fremden. Eine biblische Erinnerung, F. Crüsemann, *Maßstab: Tora. Israels Weisung und christliche Ethik*,

- (Gütersloh, 2003), 244-252.
- Crüsemann, F., “Ihr kennt die Seele des Fremden’(Ex 23:9). Eine Erinnerung an die Tora angesichts von neuem Nationalismus und Fremdenhaß,” *Concilium* 29 (1993), 339-347.
- Hieke, Th., “Das Alte Testament und die Todesstrafe,” *Bib.* 85 (2004), 349-374.
- van Houten, Ch., *The Alien in Israelite Law*, (JSOT 107; Sheffield: Sheffield Academic Press, 1991).
- Kessler, R., “Lohnarbeit im alten Israel - kreative Antworten des Alten Testaments auf neue soziale Herausforderungen,” P. Dabrock/S. Keil(Hg.), *Kreativität verantworten. Theologisch-sozialethische Zugänge und Handlungsfelder im Umgang mit dem Neuen*, (Neukirchen-Vluyn, 2011), 46-60.
- Klein, R. W., *2 Chronicles: A Commentary*, (Hermeneia; Minneapolis: Fortress Press 2012).
- Lohfink (Option für die Armen)
- Meier, W., “... Fremdlinge, die aus Israel gekommen waren ...’: Eine Notiz in 2 Chronik 30:25f aus der Sicht der Ausgrabungen im jüdischen Viertel der Altstadt von Jerusalem,” *BN* 15 (1981), 40-43.
- Nihan, Ch., “Resident Aliens and Natives in the Holiness Legislation,” R. Achenbach et al.(ed.), *The Foreigner and the Law: Perspectives from the Hebrew Bible and the Ancient Near East*, (BZAR 16; Wiesbaden: Harrassowitz Verlag, 2011), 111-134.
- Otto, E., *Die Aktualität des biblischen Fremden-Rechts*, E. Otto, *Kontinuum und Proprium. Studien zur Sozial- und Rechtsgeschichte des Alten Orients und des Alten Testaments*, (OBCh 8; Wiesbaden, 1996),

317-321. [AT Kc 194]

Perlitt, L., *Deuteronomium. 1. Teilband. Deuteronomium 1-6,** (BK V/1; Neukirchen-Vluyn, 2013).

Pleins, J., *David, The Social Visions of the Hebrew Bible: A Theological Introduction*, (Louisville, Kentucky, 2001) - (register s.v. foreigner)

Schäfer-Lichtenberger, Ch./L. Schottroff, "Fremde/Flüchtlinge," F. Crüsemann u.a.(Hg.), *Sozialgeschichtliches Wörterbuch zur Bibel*, (Gütersloh, 2009), 158-162.

Spina, F. A., *Israelites as gerim*, FS für D.N. Freedman, 1983 [AT Ad 188]

Zehnder, M., *Umgang mit Fremden in Israel und Assyrien. Ein Beitrag zur Anthropologie des 'Fremden' im Licht antiker Quellen*, (BWANT 168; Stuttgart, 2005).

검색어

이방인

나그네

게르

노크리

차별금지법

- 투고일: 2014년 1월 01일
- 심사일: 2014년 1월 20일
- 게재확정일: 2014년 2월 01일

www.kci.go.kr